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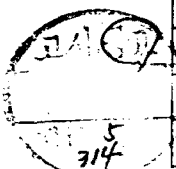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731-6656 / 전송(02)731-6956

문서번호 세정 13415-  
시행일자 1995. 11. 09.  
(경유)

취급		시	장
보존	5년		
국장	전결		/
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법무담당관	세무지도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기안	김태호		협조

수신 내부결재  
참조



제목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내무부 세제 13400-343('95. 11. 2)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정신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들 고자 그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세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1담당관(법무담당관)

제목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예고(안) 시보 게재의뢰(송부)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서울시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합니다)

첨부 입법예고안 1부. 끝.

세 정 과 장

1-1

205

193

공

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314호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 제사부차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1. 개정취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정신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골자

-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정신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하여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
- 나.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새정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정과(731-6656~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